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4.12.23.>

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(제10조관련)

1. 기술인력

기술인력에 관하여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3을 준용한다.

2. 장비

종 목 별	장 비
가. 방사선 비파괴검사	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
나. 초음파 비파괴검사	초음파탐상장치 : 1대 이상
다. 자기 비파괴검사	검사장치 : 1대 이상
라. 침투 비파괴검사	검사장치 : 1대 이상
마. 와전류 비파괴검사	검사장치 : 1대 이상
바. 누설 비파괴검사	검사장치 : 1대 이상
사. 그 밖의 비파괴검사	검사장치 : 1대 이상

※ 비 고

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.